



Single-use plastic

BAN

1 회용 플라스틱 및 비닐류 금지 조치

사업체를 위한 가이드

6 월 1 일부터:



경량 비닐봉투

11 월 1 일부터:



1 회용 플라스틱
빨대*, 막대, 식기



1 회용 플라스틱
접시 및 그릇



발포 폴리스티렌
음식용기 및 컵

* 장애나 의료적 필요로 인해 1회용 빨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특정 상황에서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본 금지조치는 1회용 면봉 및 클렌저나, 각질제거제와 같이 마이크로비즈가 포함된 개인위생 세정용품에도 적용됩니다.

어떤 것들이 금지되나요?

NSW 정부는 2022년, 2회에 걸쳐 특정 플라스틱 및 비닐류를 금지합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 경량 비닐봉투가 금지됩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다음 물품들이 금지됩니다: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막대
- 1회용 플라스틱 식기
- 1회용 플라스틱 접시, 새지 않는 덮개가 없는 1회용 플라스틱 그릇
- 발포 폴리스티렌 (EPS)로 만든 음식용기 및 컵
- 1회용 플라스틱 면봉
- 마이크로비즈가 포함된 개인위생 세정용품.

* 장애인이나 의료적 필요로 인해 1회용 빨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특정 상황에서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금지조치는 모든 사업체 및 비영리 단체에게 적용되며, 위반시 최대 \$1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금지조치는 개별 제공, 대량 제공 등 제공 단위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금지조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업이나 기타 활동을 하는 데 있어 NSW에서는 금지된 물품을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금지조치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스토랑, 카페, 바, 호텔, 테이크아웃 전문점, 파티용품 전문점, 할인점, 슈퍼마켓, 시장, 온라인샵 및 기타 사업체
- NSW에서 금지된 물품들을 공급하는 생산자, 공급자, 유통업자, 도매업체. 위반시 이 업체들에게는 두 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자선, 스포츠, 교육 및 지역사회 목적의 행사/이벤트/활동 예: 커뮤니티 그룹, 자선단체, 정부기관, 비영리 단체, 교육 제공 단체, 스포츠 단체, 종교 관련 단체 등이 식사 제공 서비스 또는 기념마련 이벤트 개최시 금지 물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위반입니까?

금지조치가 발효되면, 플라스틱 감소 및 재생산 경제법 2021에 의거해 아래 사항들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금지된 플라스틱 물품 제공
- 금지된 물품 제공에 대해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공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포함)
- 중지 또는 시정조치 고지에 불응.

금지된 물품 제공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무료, 유료 제공 불문):

- 공급, 판매, 유통 또는 재유통
- 물품 공급을 위해 물품을 받거나 보관하고 있음
- 공급을 제안 (광고, 웹사이트, 판촉물 등)
- 전시하거나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카운터 위에 올려 놓는 등).

NSW 비거주자에게 금지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금지조치가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NSW 정부는 사업체들, 단체들과 협력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정확히 알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 소매연합 (NRA)은 이미 사업체, 공급업체 및 지역사회 단체들이 금지조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단속 권한은 NSW EPA에게 있습니다. 이 법은 벌금 부과, 위반에 대한 기소 권한, 공급업체 및 사용자들에 대한 시정조치 고지 등 다양한 단속권한을 EPA에게 부여했습니다.

사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55,000, 개인에게는 최대 \$11,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매업체, 생산자,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두 배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금지조치

경량 비닐봉투

이 금지조치는 다음 용품에 적용됩니다: 봉투 전체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이 **35 마이크론 이하**이며 손잡이가 달려 있는 비닐봉투. 이는 '퇴비화가능하거나' '분해가능함' 비닐봉투를 포함합니다.

이 금지조치는 다음 용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산물 비닐봉투, 쓰레기 봉투, 동물폐기물 봉투, 의료폐기물 봉투, 또는 밀봉 포장재



첫번째로, 손님이 구매할 때마다 매번 봉투를 제공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들이 대부분 몇 가지의 물건만 구입한다면, 봉투가 아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물건 포장 박스를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꺼운 비닐봉투를 제공하기로 결정한다면, 전국 소매협회는 허용기준보다 훨씬 두꺼우며 (예: 50 마이크론) 재활용된 물질로 만든 비닐봉투를 권장합니다.

다른 대안으로 천, 헤시안, 쥬트, 보냉가방 등의 재사용가능한 가방을 판매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손님들에게도 재사용할 수 있는 가방을 가져오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보세요.

'재사용가능' 등의 문구가 있다고 해서 법에 부합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봉투의 두께에 대해 서면으로 공급업체의 확인을 받아주세요.

그래도 여전히 1회용 봉투를 제공해야 한다면, 지속가능한 물질로 만들어졌거나 재활용된 종이봉투 제공도 고려해 보세요.

퇴비화가능하거나 '식물성 물질'로 만들어진 경량 비닐봉투도 금지조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금지조치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막대, 식기**
(포크, 수저, 칼, 젓가락, 포크스푼, 이쑤시개 등)



- **1회용 플라스틱 접시 및 그릇**
(새지 않는 덮개가 있는 그릇 제외)



- 발포 폴리스티렌 음식용기 및 컵 (뚜껑이 달린 용기, 컵 등)



지속가능한 대안 선택

첫째:

정말 이 물품들을 제공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손님들이 음식을 집이나 사무실로 가져간다면, 1 회용 물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요청시에만 빨대, 식기등을 제공함으로써 비용도 절약하고 환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재사용가능한 물품을 고려해 보세요. 식당 내에서 식사가 가능한 곳이라면, 씻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금속, 유리 또는 세라믹 재질을 고려해 보세요. 또는 고객들에게 재사용 가능한 식기를 판매하고 다음에는 본인의 식기를 직접 가져오라고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아직도 1 회용 물품이 필요하다면, 공급업체에게 비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물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예를 들면 종이 빨대, 나무 또는 대나무 식기, 코팅되지 않은 접시나 그릇, 판지나 사탕수수 펄프로 만든 뚜껑이 달린 음식용기 등이 있습니다.

예외 규정

이 금지조치는 다음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빙하는 데 필요한 기구 (예: 집게나 큰 서빙용 접시)
 - 기타 플라스틱 컵 (EPS 컵만 금지)
 - 자동화 공정을 통해 이미 포장식품, 음료의 일부로 포함된 물품 (예: 팩 주스에 부착된 빨대, 냉동음식에 포함된 그릇)
 - 음식재료 및 날음식 포장에 사용되는 EPS 트레이 (예: 생고기, 해산물, 과일 및 야채)
- 사업체간 운송에 사용되는 EPS 용기.

빨대 관련 예외 규정: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는 상점에서는 직원을 통해 장애인이나 의료적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1 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빨대는 진열해서는 안되며, 다른 손님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퇴비화가능한 플라스틱은 금지 대상에 속합니다

퇴비화가능한 플라스틱 빨대, 식기, 그릇 및 접시는 NSW 금지조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봉 및 마이크로비즈

본 금지조치는 1 회용 면봉 및 클렌저나 각질제거제와 같이 마이크로비즈가 포함된 개인위생 세정용품에도 적용됩니다.

종이, 나무, 대나무로 만든 면봉은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재사용가능한 막대를 구입하여 면 부분만 계속 교체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Bead Recede 가 주도한 자발적 산업 협정에 따라 이전에 미세 마이크로비즈를 포함하고 있었던 상품중 99% 이상에서 이제 마이크로비즈가 사라졌습니다. NSW 의 금지조치로 인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마이크로비즈 상품들에서도 이 해로운 성분이 없어질 것입니다.

퇴비화가능한 플라스틱은 금지 대상에 속합니다



퇴비화가능한 플라스틱 빨대, 식기, 그릇 및 접시는 NSW 금지조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오플라스틱, 퇴비화가능 플라스틱은 뭐죠?

- 바이오플라스틱은 석유가 아니라 변형된 식물성 물질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입니다.
- 이 플라스틱은 종종 ‘식물성 플라스틱’, ‘퇴비화가능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 ‘무플라스틱’ 등으로 묘사됩니다.
- 그 중 한 예는 폴리락타이드 (PLA)이며, 옥수수 전분이나 사탕수수를 변형해서 만듭니다.
- 대부분의 바이오플라스틱은 상업적 분해시설에서 특수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자연분해되지 않습니다. 즉, 환경내에 방치되거나 매립장으로 보내지면 분해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바이오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만큼이나 큰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사용하는 물건에 바이오플라스틱이 없는지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플라스틱과 비슷하게 생겼거나 느낌이 비슷한데 ‘무플라스틱’, ‘생분해성’, ‘퇴비화가능’, ‘분해가능’, ‘식물성’ 이라고 설명되어 있다면, 바이오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로고, 라벨, 제품 설명이 그렇다고 해서 물품이 법에 부합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공급업체에게 물건들이 폴라이머, 플라스틱 또는 퇴비화가능 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참고: 퇴비화가능 플라스틱을 포함해 금지된 물품에 대해 거짓정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금지된 물품 진열

NSW 에서 금지된 물품을 받거나, 소유하거나, 광고하거나 진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 NSW 이외의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아닌 이상, 금지조치 발효후에는 금지된 물품을 상점에 보관하지 마세요.
- 여러분의 웹사이트, 판촉물에 NSW 의 금지 품목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세요. 직원들도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웹사이트 설정을 특정지역 제한으로 변경하거나, 각 금지물품에 대해 ‘NSW 지역 공급 불가능’ 이라고 기재해 놓으세요.

선택 사항:

전국에 걸쳐 있는 사업체는 다른 지역의 지점에도 NSW 금지조치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국 소매협회에 연락하세요.

공급업체에 확인할 사항들

대체용품 주문전, 공급업체에 다음 사항들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대체용품들이 2022 년 발효되는 NSW 금지조치에 부합하는지
- 어떤 형태의 폴라이머, 플라스틱, 퇴비화가능 플라스틱이라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 비닐봉투 모든 부분의 두께가 35 마이크론 이상인지

만일 위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라도 yes 가 아니라면, 금지조치 대상일 확률이 있습니다.

참고: EPS 용기나 컵의 대체재는 다른 형태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NSW EPA 나 전국소매협회로 연락하세요.

1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미리 계획을 세우고 미리 바꾸세요.

- 공급업체, 직원들 및 고객들이 이 변화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이제 금지된 물품을 주문하지 말고 재고를 사용하세요. 금지조치 이전에 구매했다라도, 일단 금지조치가 시작되면 더 이상 이 물품들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재고정리를 해보시고, 쌓여있는 금지물품을 사용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보세요.
- 재고가 많다면, 공급업체와 의논해보세요.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초과 재고를 다른 주로 옮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주에도 비슷한 금지조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제 시간에 재고를 다 소비하거나, 교환이나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지역 재활용 센터에 혹시 물건을 조금 가져갈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2 공급업체와 의논하세요

무엇이 장기적으로 최선인지 생각해보세요.

꼭 금지조치때문이 아니라도, 더 많은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대안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일단, 손님들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봉투나 식기류를 계속 제공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 다음으로, 씻어서 재활용가능한 다른 용품을 사용해 손님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줄일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 그 다음으로, 손님들이 정말 1회용 용품이 필요하다면, 이 용품들이 법에 부합하고 안전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지물품을 제공하거나, 금지물품 해당 유무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3 여러분의 직원 및 손님들에게 알려주세요

직원들이 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직원들에게 여러분이 결정한 사항을 알리고, 고객들의 문의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음료 부분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요청시 장애가 있는 손님(증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음)에게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해도 되지만, 전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손님들에게 미리 고지하세요.

금지조치에 대해 손님들에게 미리 알리고여러분이 시행할 조치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세요. 금지조치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금지조치에 대한 문구를 써놓아 고객들이 적응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문구들은 (번역된 문구 포함)

dpie.nsw.gov.au/plastics-ban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NSW 정부를 대신해, 전국 소매협회는 소매점, 공급업체 및 지역사회 단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교육 및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정보표
- 관련 문구 및 카운터 비치용 자료
- 번역된 자료
- 수천번에 걸친 매장 방문
- 온라인 세미나
- 설명회

수신자부담 핫라인.

전국 소매협회는 또한 호주 다른 지역의 1회용 플라스틱/비닐 금지조치에 대해서도 다른 주, 또는 전국에 걸쳐 이해관계가 있는사업체들에게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dpie.nsw.gov.au/plastics-ban를 방문하세요.

전국 소매협회 핫라인: 1800 844 946

전국 소매협회 이메일: sustainability@nra.net.au